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(추미애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0120 발의연월일: 2025. 4. 25.

발 의 자:추미애·전재수·신영대

이성윤 • 부승찬 • 김동아

한병도 · 김기표 · 박용갑

정성호 · 송옥주 · 한정애

전종덕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재 「자동차관리법」에서 자동차의 효율적 관리 및 성능·안전확보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, 대통령령에서 「군수품관리법」에 따른 차량은 적용이 제외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음.

그런데 최근 군용트럭 교통사고로 병사들이 사망하는 등 인명사고 가 발생한 가운데, 그 주요 원인으로 노후된 군용차량과 좌석안전띠 미설치 등의 문제점이 지적됨에 따라 군용차량의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.

특히 국민청원을 통해서도 노후된 군용차량에 대한 불용 처분과 모든 군용차량에 좌석안전띠 설치 및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는 등 법안 개정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타나고 있음.

이에 노후된 군용차량은 불용 결정하고 차량에 좌석안전띠 설치 등

안전조치 방안을 마련하여 군인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임(안 제13조 의3 신설). 법률 제 호

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군수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장제4절의 제목 "처분"을 "운용·처분"으로 한다.

제1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3조의3(군용차량의 안전 확보) ① 국방관서의 장과 각군 참모총장은 군수품인 차량(이하 이 조에서 "군용차량"이라 한다)의 안전한운행을 위하여 사용연한, 운행거리 등을 고려하여 제13조제1항에 따른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.

② 군용차량 탑승인원의 안전을 위하여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좌석안전띠설치 등 안전조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절 <u>처분</u>	제4절 <u>운용·처분</u>
<u> <신 설></u>	제13조의3(군용차량의 안전 확보)
	① 국방관서의 장과 각군 참모
	총장은 군수품인 차량(이하 이
	조에서 "군용차량"이라 한다)의
	안전한 운행을 위하여 사용연
	한, 운행거리 등을 고려하여 제
	13조제1항에 따른 불용의 결정
	<u>을 하여야 한다.</u>
	② 군용차량 탑승인원의 안전
	을 위하여 국방부렁으로 정하
	는 바에 따라 좌석안전띠 설치
	등 안전조치 방안을 마련하여
	야 한다.